

Ambiguitas contra stipulatorem*

—不明確準則에 관한 小考—

Prof. Dr. A. Wacke, Köln

崔 秉 祚**譯

〔譯者 前註〕

우리나라도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1986.12.31 法律 第3922號)과 그 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7호)이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자로 발효하였다. 같은 법률 제 5조는 2항에서 “約款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顧客에게 유리하게 解釋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民法과 달리 계약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立法的으로 明文의 準則을 마련하고 있다. 約款規制法은 독일의 「普通去來約款法」의 모범을 따른 것으로 우리 법의 해석·운용에는 독일법이 많은 참조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Andreas Wacke 교수의 글은 우리 約款規制法 제 5조 2항과 내용이 동일한 독일 普通去來約款法 제 5조에 관한 史的 素描이다. 우리 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譯出해 보았다.

* * *

Ambiguitas contra stipulatorem

多義的인 의사표시의 해석상의 의심은 問答契約의 채권자, 즉 자신의 채무자에게 設問을 함에 있어 시 契約條項을 定한 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問答契約에 관하여 盛期古典時代 로마의 법률가였던 Publius Juventius Celsus (기원후 2세기전반)가 定立한 이 解釋의 準則은 그의 이름을 따서 “켈수스의 不明確準則”이라고도 한다. 賣買와 賃約의 附隨約定(pacta)들을 賣渡人과 賃貸人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보다 오래되었다. 이것은 veteres라고 지칭되는 古典期前 시대의 법률가들과 아우구스투스 治世에 활동하였던 初期古典법률가 Marcus Antistius Labe에게로 소급한다.⁽¹⁾

이 해석준칙의 法政策的 근거는 로마의 法史料에 이미 나타난다. 계약조항을 정한 자는 그것을 보다 분명히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quia potuit re integra(계약체결시에) apertius dicere(Dig. 18. 1.21; 또한 2.14.39). 그러므로 오늘날 대개 略해서 인용되는 이 準則은 완전한 형태로는 다음과 같다: Ambiguitas contra stipulatorem, quia clarius loqui potuisset—애매함은 채권자에 불리하게, 왜냐하면 그는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

形式的 口述契約인 問答契約의 경우 채권자의 文言에 대한 책임은 특히 명백하다. 즉, 設問[請約]을 하는 채권자는 계약조항을 자신의 재량으로 확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諾約하는 채무자는 그의 對答[承諾]에서 이에 의존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는 congruenter ad interrogatum respondere[設問에 一致되게 대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Inst. 3.15.1; 예컨대 Spondesne? Spondeo). 요컨대 問答契約의 조항들은 一方的으로 미리 확정되는 것이다. 不明確準則을 賣渡人과 賃貸人에게도

* Juristische Arbeitsblätter 1981, S.666~668의 번역임. 脚註에서는 原註의 내용중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략하였고 (특히 文獻典據), 대신에 原文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덧붙였다. 그러나 原註와 譯註로 따로 구별하지 않고 정리하였다. 副題도 譯者が 붙인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Dig. 34.5.26 및 45.1.99 (Celsus); 2.14.39 (veteres); 18.1.21 (Labeo).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이들 諾成契約은 어떠한 정해진 형식에 구애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계약조항을 상대방 당사자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해석의 준칙은 賣買나 賃約의 계약조항들(leges venditionis 내지 locationis)이 물건을 내놓으면서 賣渡人이나 賃貸人등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확정되었던 통상의 경우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이 준칙은 이들 계약들이 아직 無方式의 諾成契約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初期로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Pomponius Dig. 18.1.33은 하나의 適用例를 제시한다: 不動產賣渡人이 이웃토지를 위한 地役權을 留保한 경우에는 그것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의심은 그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註釋學派의 법률가들은 이 해석원칙의 古典法上的의 두 適用例를 “in dubio contra proferentem”(의심스러운 때에는 [조항의] 設定者에 불리하게)라는 표현으로 일반화하였다. Accursius의 標準註釋(Glossa ordinaria)은 로마法史料로부터 解釋指針의 표준을 추출해 냈고, 後繼者들은 이것을 다소간 수정된 형태로 전수받았으며 이것은 앵글로·색슨의 法學도 포함해서 유럽法學의 共有財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解釋準則의 目錄에 있어서 不明確準則은 最後의 자리를 차지한다. Papinianus의 유명한 句節 Dig. 50.16.219: In conventionibus contrahentium voluntatem potius quam verba spectari oportet⁽²⁾에 의하면 순전한 文言의 해석보다 意思의 探索이 우선적이다. 독일民法(BGB) 제133조⁽³⁾는 여기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특정한 계약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當事者意思가 탐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失敗하기보다는 成功하게끔(ut magis valeat quam pereat) 해석을 해야한다.⁽⁴⁾ 또 보다 개연성이 없는 해석보다는 보다 개연성이 있는 해석(quod verisimilius)을 해야하며,⁽⁵⁾ 문제가 되는 개별조항은 계약 전체와의 맥락에서 고찰하여야 한다.⁽⁶⁾ 등등. 마지막으로 그리고 끝으로 비로소, contra proferentem 해석이 행해진다. 그러나 모든 意思의 探索은 文言上的의 不明確함이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도대체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Dig. 32.25.1 (유언에 관한 것임)의 유명한 표현에 따른 것이다: Cum in verbis nulla ambiguitas est, non debet admitti voluntatis quaestio. 文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意味를 가지고 “해석”하면서(deuten) 效力意思를 믿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自然法典들(프로이센一般私法[ALR] 14 §§ 65~74; 15 §§ 252~269와 프랑스民法[Code civil] Art. 1156~1164)은 이들 해석준칙을 위울만한 가치가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이 법전들은

- (2) “계약에 있어서는 文言보다는 체결자들의 意思를 고려해야만 한다”.
- (3) Bei der Auslegung einer Willenserklärung ist der wirkliche Wille zu erforschen und nicht an dem buchstäblichen Sinne des Ausdrucks zu haften(“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실제의 의사를 탐색해야 하며 표현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法律의 해석에 관한 Celsus의 유명한 警句 Dig. 1.3.17에 대응하는 것이다: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崔秉祚, 法學 제27권 1호 [1986.4] 194f. 참조).
- (4) 遺言에 대해서는 § 2084 BGB에 明文의 규정이 있다(이른바 favor testamenti, 보다 일반적으로는 favor negotii). Ulpianus Dig. 21.3.31의 例: 어떤 법률가들은 좁은 文言해석을 함으로써 매도된 노예가 건강하고 도둑이 아니라는 보증(Zusicherung)은 쓸모없다고 보았다. 즉, 그 노예가 실제로 건강하고 도둑이 아니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는 無用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文字에 의한 표시는 하자 존재라는 사실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 표시는 (§ 306 BGB에서 말하는) 不能한 것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은 保證의 意思表示는 通說과 같이 당연히 하자없음의 보증으로 합당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보증은 (§ 463 BGB에 따라서) 履行利益에 대한 배상책임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 (5) Julianus Dig. 50.17.64 참조: Ea quae raro accidunt, non temere in agendis negotiis computantur—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은 去來協商에 있어서 성급하게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6) Celsus Dig. 1.3.24 (法律 및 法律行爲의 해석 모두에 동일하게 합당하다): Incivile est nisi tota lege perspecta una aliqua particula eius proposita iudicare(崔秉祚[위註 3] 195f. 참조).

(또한 오스트리아一般民法典[ABGB] § 915도)⁽⁷⁾ 後順位로 우리의 不明確準則을 포함하고 있다(ALR는 I 5 § 266)⁽⁸⁾. 프랑스民法은 제1162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Dans le doute, la convention s’interprète contre celui qui a stipulé et en faveur de celui qui a contracté l’obligation.”⁽⁹⁾ 이외에 로마법에서와 같이 제1602조에서 賣渡人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Le vendeur est tenu d’expliquer clairement ce à quoi il s’oblige. Tout pacte obscur ou ambigu s’interprète contre le vendeur.”⁽¹⁰⁾ 이 자주 비판된, 賣渡人에게 불리한 두번째 특별규정의 내적 근거는 賣渡人이 대개의 경우 매수인보다는 그에게 契約의 規定形態를 결정짓는 것을 허용하는 經濟的 優位를 가진다는 데 있다고 본다.

독일民法(BGB)은 先驅法典들과 달리 法律 및 法律行爲의 해석에 관한 一般規定을 (§§ 133와 157 BGB)⁽¹¹⁾의 법률해위에 대한 기본규범을 제외하고는) 포기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解釋규정의 實用性을 상당히 낮게 평가한데서 일어난 것이었다. 특히 實定化된 法條文을 통해서 法官의 解釋의 自由에 제한을 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처의 부정적인 결과는 승인된 해석규칙들의 知名度도 그와 더불어 떨어져서, 이것들이 이제는 거의 잊혀지지 않는 民法總則 教科書로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民法註釋者는 누구도 이것들을 상세히 다루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이다.

不明確準則의 하나의 適用例은 독일民法 자체가 § 262⁽¹²⁾에 選擇債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選擇權은 의심스러운 경우 債務者가 가진다.⁽¹³⁾ 채권자는 이것을 명백하게 要約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判例은 흔히 不明確準則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경직되지 않고 (흔히 강조되듯이) 탄력적으로 구사한다.⁽¹⁴⁾ 이 준칙은 일찌기 普通去來約款의 해석에 있어서 탁월한 의미를 가졌다. 1977년의 普通去來約款法(AGB-Gesetz)은 전에 民法의 입법자들이 그랬듯이 해석에 관한 일반규정들을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 立法節次가 경과하면서 비로소 數十年來 확고하게 실용되던 不明確準則을 (1942년의 현 이태리民法[Codice civile] Art. 1370⁽¹⁵⁾의 본을 받아들여) AGB-Gesetz § 5에 채택하였다.

“Zweifel bei der Auslegung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gehen zu Lasten des Verwenders”⁽¹⁶⁾ (§ 5 AGB-Gesetz). 근거는 로마법에서처럼 통상 AGB設定者는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詳細히 보아야 한다. 우선, 利得과 不利益사이의 相計판단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자신의 利得으로 一方的 契約形成의 勢力을 행사하는 자는 자기가 야기한 不明確함으로

(7) 아래 註 19을 보라.

(8) Kann ein Vertrag nach vorstehenden Regeln nicht erklärt werden, so ist derselbe gegen den auszulegen, der in seiner Willensäußerung zweydeutiger eines verschiedenen Sinnes fähiger Ausdrücke sich bedient hat (“계약이 앞의 규칙들에 의해서 해명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신의 의사표명에 있어서 상이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二義的인 표현을 사용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9) “의심스러운 때에는 계약은 要約한 자에게 불리하고 채무를 부담한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10) “매도인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모든 약정은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11) Verträge sind so auszulegen, wie Treu und Glauben mit Rücksicht auf die Verkehrssitte es erfordern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12) Werden mehrere Leistungen in der Weise geschuldet, daß nur die eine oder die andere zu bewirken ist, so steht das Wahlrecht im Zweifel dem Schuldner zu (“다수의 급부가 어느 하나만이 선택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하는 방식으로 채무의 내용이 되고 있는 때에는 선택권의 의심스러운 경우 채무자가 가진다”).

(13) 로마법과 프랑스民法 Art. 1190도 같다.

(14) 소송상의 의사표시는 이미 로마인들이 表意者에 유리하게 해석하였다. Dig. 5.1.66.

(15) Le clausole inserite nelle condizioni generali di contratto o in moduli o formulari predisposti da uno dei contraenti s’interpretano, nel dubbio, a favore dell’altro (“계약자중 1인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계약의 일반약관 또는 例文이나 範例에 포함된 조항들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16)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상의 의심은 약관사용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말미암은 不利益을 감수해야만 한다. AGB設定者는 자기 자신의 利益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注意를 기울이는 법이므로, 不明確한 점이 있는 경우, 습은 不合意에 관한 BGB § 155⁽¹⁷⁾를 배제하고, 그 설정자가 그 조항의 理解에 하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 조항이 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더라도 감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法的으로 경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열등한 고객의 保護와 바람직한 豫防效果라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관점이 추가될 수 있다. 不明確準則을 法律에 수용하는 것은 보통거래약관의 設定者로 하여금 明哲判明하게 표현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여기는 경우 이 準則은 (말하자면 고객을 誤導한 데 대한 “處罰”로서), 그들이 二義의 不明瞭함을 부주의로 야기했든 혹은 不正直한 의도로 삼입했든, § 5의 제재를 가져온다. AGB § 5의 法律效果는 多義의 조항의 無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이 점은 종종 오해된다), 고객에게 有利한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不明確準則의 능력은 최근까지 과대평가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 9~11의 公然한 內容統制의 가능성을 포함한 AGB-Gesetz의 公布前에는 不明確準則은 종종 그 外樣下에 法官에 의한 內容統制에 이용되어야만 하였다. 예컨대 免責條項은 좁게 해석하여 契約과 不法行爲의 청구권기초(Anspruchsgrundlage)에 국한되었다. 法院에 의해서 동시에 이론구성된, 그러나 AGB에는 명시적으로 함께 언급되지 않은 契約締結上의 過失(culpa in contrahendo)에 기한 準契約的(혹은 “法定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免責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두가지 이유에서 잘못이었다. 첫째로, 企業은 추측컨대 고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賠償청구권으로부터, 그 實體法的 기초를 고려함이 없이, 벗어나려고 원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企業團體의 約款은 判決이 알려진 후 곧 文言上 고객에게 不利하게 개정될 것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異議가 제기되었던 不明確準則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不明確準則으로의 도피는 단 한번만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외에 진정한 實體法的 內容統制가 없이는 안된다.

독일의 法院들은 때때로 註釋學派의 법률가들이 이미 터득했던 인식, 즉 解釋準則들의 位階上 不明確準則에는 다른 모든 인식가능성들이 消盡된 후에 그저 最末席만이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간과하였다. 이미 로마의 법률가들도 條項設定者가 不利益을 받아야 한다는 형식적 관점에 따를 경우 이 準則의 적용이 예상되었던 수많은 사례에 있어서 이 準則을 적용하지 않았다. 古典法律家들은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ambiguitas의 존재를 부인하였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不明確準則은 다른 해석의 補助手段을 통해서 제거될 수가 있었고, 더우기 設定者에게 有利하게 제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解釋이 不明確準則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이 準則은 그러므로 (眞正한) 解釋準則이 아닌 것이다. 이 준칙은 오히려 해석이 명확한 결과에 이르지 않고 法官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最終的인 확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non liquet(不明)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대한 決定의 指示만을 포함할 뿐이다. 不明確準則은 그러므로 立證責任을 부담하는 當事者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¹⁸⁾ 입증책임의 경우에도 證據의 判斷이 立證責任에 기한 판단보다 先行해야만 한다. 兩當事者가 일치해서 多義的인 조항을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가 유효한 것이다. 이 점은 이것을 원용하고 표현한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불이익으로 그에게 불리한 의미가 채택되어야만 한다.

- (17) Haben sich die Parteien bei einem Verträge, den sie als geschlossen ansehen, über einen Punkt, über den eine Vereinbarung getroffen werden sollte, in Wirklichkeit nicht geeinigt, so gilt das Vereinbarte, sofern anzunehmen ist, daß der Vertrag auch ohne eine Bestimmung über diesen Punkt geschlossen sein würde(“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계약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사실은 합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계약이 이 사항에 관한 정함이 없이도 체결되었으리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한, 합의된 것은 유효하다”).
- (18) 심판인의 評決이 可否同數인 때에 pro reo(被告[人]에 유리하게) 내지 pro libertate(自由에 유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로마의 표결規則도 유사한 것이다.

協商을 거친 個別契約의 경우 不明確準則은 다음의 이유로 적용되는 일이 드물다. 첫째로, 공동으로 작성한 약정의 경우 흔히 어느 당사자가 多義의인 표현을 야기했는가 하는 것은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특징적인 相異한 勢力地位가 대개 결여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보통거래약관에 통상 말없이 추종하는 반면에, 個別契約에서는 一方當事者의 明確한 의사표시의 義務는 이에 못지 않게 증대한 相對方당사자의 問議 및 情報義務에 의해서 균형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AGB-Gesetz § 5의 不明確準則의 適用 범위는 AGB使用者와 그의 고객사이의 個別訴訟에 국한해야만 한다. 이에 반하여, 消費者保護團體 등이 AGBG §§ 13ff.에 따라서 추구하는 抽象的 不作爲節次에서는 異議가 제기된 조항이 AGBG §§ 8ff.의 無效目錄에 해당되는가의 검토에 있어서 正反對로 使用者에게 가장 有利한 해석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團體訴訟의 과정은 使用者가 법적으로 경험이 없는 고객과 訴訟前에 紛糾가 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不明한 조항을 去來에서 알아내는 것이다. 不明確準則의 실시한 目的(고객보호와 一義의 조항作成으로의 강제)은 불명확한 조항을 추상적 통제절차에서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이를 그르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訴訟前의 단계에서 使用者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이 제시되고 고객이 이런 이유로 해서 訴訟의 위협에 전혀 응하지 않을 위협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不明確準則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른바 制限原則(Restriktionsprinzip)이 있다. 이에 따르면 채입의 정도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債務者에게 유리한 해석쪽을 택해야 한다(債務者優待, favor debitoris). 오스트리아民法(ABGB) § 915⁽¹⁹⁾는 양 원칙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 이 制限原則도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에게까지 소급한다. in dubio mitius; in dubiis benigniora(Gaius Dig. 50.17.56)의 심스러운 때에는 보다 柔和한, 보다 好意的인 해석.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少額이 채무액으로 간주된다.⁽²⁰⁾ 이것은 오늘날 예컨대 어음法 Art. 6 Abs. 2과 手票法 Art. 9 Abs. 2에 의해서도 그렇다.⁽²¹⁾ (또한 量刑에 대하여 法院組織法[GVG] § 196 Abs. 3 끝부분⁽²²⁾ 참조). 不明確準則 이외에 AGB-Gesetz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制限原則에 적용범위가 남아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거래약관이 고객에게 義務를 지우는 限에는 이 兩原則은 일치하여 制限的인 해석에 이른다. 그러나 고객에게 權利가 부여되는 限에서는 先順位인 不明確準則이 이들 권리의 擴張解釋으로 이끌고 制限原則은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制限原則은 누가 不明한 約定을 成案했는가 하는 것을 도의시하므로 예컨대 質이나 違約罰에 의한 擔保約定이나 競争禁止條項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兩당사자가 공동으로 成案한 경우에도 좁게 해석해야만 한다.

(19) Bei einseitig verbindlichen Verträgen wird im Zweifel angenommen, daß sich der Verpflichtete eher die geringere als die schwerere Last auflegen wollte; bei zweiseitig verbindlichen wird eine undeutliche Äußerung zum Nachteile desjenigen erklärt, der sich derselben bedient hat(“片務契約의 경우 의심스러운 때에는 義務부담자는 重한 부담보다는 輕한 부담을 부담하려 한 것으로 인정된다. 雙務契約의 경우 不明瞭한 의사표시는 이것을 이용한 자의 불이익으로 해석된다”).

(20) In obscuris quod minimum est sequimur(불명료한 것들에 있어서는 최소의 것을 우리는 따른다), Dig. 50.17.9. Dig. 50.17.34; 45.1.83.3; 45.1.109 참조. Dig. 44.7.47에 의하면 이에 부응해서 의무부담은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인되어야 하고, 의무해소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긍정되어야 한다(in obligando propensior ad negandum, in liberando facilius ad liberationem).

(21) 우리 어음법 제 6조 2항, 수표법 제 9조 2항과 같다.

(22) Bilden sich in der Straffrage zwei Meinungen, ohne daß eine die erforderliche Mehrheit für sich hat, so gilt die mildere Meinung(“刑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필요한 多數를 얻지 못한 채 두 견해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刑이 輕한 쪽의 견해가 유효하다”).